

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

한국광해광업공단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초대 비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「한국광해광업공단」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, 광물자원산업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되는 공기업입니다.

■ 공모직위 :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(6명)

■ 임 기 : 2년

-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

■ 응모자격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, 아래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

※ 세부사항은 「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(별첨#2)」 반드시 참고

구 분		주요내용
직무수행요건	기본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 및 업무에 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능력■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술적 합리성 검토 능력■ 재무 및 회계에 관한 회계적 적정성 검토 능력■ 사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리성 자문 능력■ 청렴성, 준법성, 도덕성 등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윤리 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솔선하는 능력
	고유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도■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■ 환경 분야(폐기물, 온실가스 등)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■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
자격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자문 및 견제능력을 갖춘 사람■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■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갖춘 사람

■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, 기획재정부(www.moef.go.kr), 인사혁신처
나라일타(www.gojobs.go.kr), 한국광물자원공사(www.kores.or.kr), 한국광해관리공단 (www.mireco.or.kr)
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- 지원서(지정 양식, 별첨#1-1) 1부.
- 자기소개서(지정 양식, 별첨#1-2, A4 4매 이내) 1부.
- 직무수행계획서(지정 양식, 별첨#1-3, A4 5매 내외) 1부.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지정 양식, 별첨#1-4) 1부.
- 결격사유 등 부존재 확인서(지정 양식, 별첨#1-5) 1부.
- 학력 증명서, 경력(재직) 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(별첨#1-6) 각 1부.
 - * 학력 증명서의 경우, '대학교 이상' 기재한 모든 학력에 관하여 제출
 - ** 경력사항, 자격 및 면허·논문 등은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기재
- 기타 임원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

■ 제출기간 및 제출처

- 제출기간 : 2021.7.7.(수) ~ 2021.7.19.(월), 18:00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제출처 : (우 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, 세종파이낸스센터(1차) 4층,
423호,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원추천위원회(☎ 044-863-4395)
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(제출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)
 - ※ 가급적 등기우편 제출 권장, 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불가

■ 심사방법

-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
 -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(합격여부는 개별 통보)

■ 유의사항
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허위서류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나 결격사유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원 추천 또는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기재, 착오,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원추천위원회(☎ 044-863-43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7월 7일

한국광해광업공단 임원추천위원회